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30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잔류성분에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 3

2.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도입 확대 ····· 14

Ⅰ.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53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잔류성분에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다만,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의도적혼입식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품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3. (생 략)

□ 동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ⅰ)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ⅲ)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1]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ⅳ)「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2]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 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함)을 말하며,

제3조에서는 표시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18조[3]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었는데, 혼입치가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음.[4]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 현행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요[5] >

구분	내용
유전자변형식품 개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GMO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승인품목(6종)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표시면제	① GMO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된 경우(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까지는 관련 서류 구비 시 GMO 표시 면제 * 농산물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 (대만 3% 이하, 일본 5% 이하, 호주 1% 이하, EU 0.9%이하)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GMO 유전자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과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지류, 당류 등

□ 2025년 1월 기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6개 품목의 농산물인데,

현행 유전자표시제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표시의 예외를 두고 있어, 6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올리고당, 물엿, 옥수수기름, 전분당, 카놀라유 등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볼 수 없는 실정임.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로, 2023년 기준 국내에 반입된 식품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6]는 약 1,028만 톤(34.2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식품용이 12%(121.7만 톤)의 비중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89.6%에 해당하는 921.9만 톤이 수입되었고, 대두(92.8만 톤), 면화(13.5만 톤)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국내 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

(단위: 만 톤, 백만 불)

용도	총계		옥수수		대두		면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1,028.2	3,427	921.9	2,795	92.8	579	13.5	52
식품용	121.7	651	28.9	72	92.8	579	-	-
사료용	906.5	2,776	893.0	2,723	-	-	13.5	52

자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 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7]를 삭제하고(이른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6)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하며, 통상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LMO 중 농산물을 의미함.

7)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비의도적 혼입치[8] 허용 비율을 식약처고시[9]에서 정하고 있는 3%에서 0.9%로 강화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식품위생법 및 고시)	개정안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유전자변형식품등) 다만,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함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제외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이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비의도적혼입식품등)

□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안 발의, 국정감사,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2024년 3월 발표한 '2023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10]

---

8)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

< 국민청원 및 관련 법률안 등 현황 >

구분		발의자 등	주요 내용
식품 위생법 개정안	제20대	남인순, 김현권, 윤소하, 김광수 의원안 등 4건	유전자변형 DNA 및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
	제21대	김승남, 위성곤 배진교 의원안 등 3건	
유전자변형 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1대	양이원영의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2024년 국정감사		남인순, 이개호의원	품목별 단계적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결정해서,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
2018년 국민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7개 단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제품(유지류, 당류 등)까지 GMO 표시대상 확대(완전표시제) 등 요구

□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식품 산업계에서는 국내 식품산업에서 가공·조리용으로 사용

10)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 태도, 법·제도 인지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3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관련 조사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이며,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남녀 800명(세종, 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함.

하는 대다수 식용유, 전분당 등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식품업계의 혼란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전분당협회 관련 의견>

구분	주요 내용
한국식품 산업협회	○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은 원료 수급의 안정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과도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
한국전분당 협회	○ 전분당 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있는 장치산업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급 기반이 중요 ○ GMO 옥수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는 GMO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인식할 우려 ○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식품업계의 혼란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

<u>둘째</u>, 미국, 일본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DNA가 남아있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하면서 비의도적 혼입치는 5%이하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EU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DNA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하면서 비의도적 혼입치는 0.9%이하로 표시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등 각 나라의 사회적·산업적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음.[11)]

<u>셋째</u>,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였

11) [참고 1] 주요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들 식품등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검증 및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12)]

넷째, 식약처는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산업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해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13)]

다. 관계 기관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Non-GMO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완제품 가격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국내 업체의 산업 경쟁력 악화, 완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불가로 인한 사후관리 적정성 등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GMO 표시기준 강화(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3%에서 0.9%로 변경)는 수입 원재료의 가격 상승 및 안정적 공급 우려, 완제품 가격 상승 등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국내외 사회적·산업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12)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13) [참고 2]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2) 한국식품산업협회

□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은 원료수급의 안전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과도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전분당협회

□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식품업계의 혼란과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비의도적 혼입치 0.9%의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가 없으며, 수입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임.

2.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도입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는 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제5조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제8호[14]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4월 동 고시 제정 당시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하여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등의 표시 규정을 신설하였음.

□ 동 고시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로 사용한 경우(가장 많이 사용)에만 허용되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15]에

---

1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0.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됨.

-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대두를 원재료 함량의 50% 이상 사용하거나 원재료 함량 중 대두가 가장 많이 사용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음. 다만,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두가 1%라도 포함된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없음.

□ 즉,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GMO가 0%일 때만 가능하며, 표시대상이 아닌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등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16]

□ 이에 개정안은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② 비의도적혼입식품등(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16) 소비자가 만드는 GMO완전표시제 2020 포럼(2019.12.3.)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므로,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EU와 미국은 Non-GMO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고 GMO가 아닌 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이며,

일본은 GMO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Non-GMO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비의도적 GMO의 혼입이 5%이하인 경우는 '분별생산유통관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표시만 가능하고,

GMO의 혼입이 0%인 경우는 'GMO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Non-GMO 표시제품에는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17]

17) 유병덕(202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다. 관계 기관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Non-GMO표시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임.

□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외를 위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현행처럼 GMO의 혼입이 0%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주요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중국	EU
완전 표시제		×	×	×	△	△	○
표시대상	승인품목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9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파파야, 겨자(갓)	14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파인애플, 호박, 사탕수수, 연어, 돼지	5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4종 대두, 옥수수, 카놀라, 토마토	5종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대상식품	6종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9종 농산물 및 33개 가공식품	14종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5종 농산물, 6개 1차가공품[1], 9개 고차원가공품	4종 농산물, 8개 가공식품[2]	5종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기준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함량 3순위 이내, 5% 이상인 경우)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20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12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식용유, 당류 등 표시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	표시 (식용유만 해당)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	**5%이하**	**5%이하**	**3%이하**	**0%(불인정)**	**0.9%이하**

1) 1차가공품(두부, 두유류, 순두부류, 반건조두부, 두부피, 대두단백미트제품)
고차원가공품(대두유, 간장류,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시럽, 면실유, 카놀라유, 사탕무당, 사탕무당밀)

2) 8개 가공식품(대두분, 대두유, 대두박, 옥수수유, 옥수수분, 유채씨유, 유채박, 토마토소스)

【참고 2】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일 자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제1차 ('20.1.30)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구성 배경, 협의회 운영 위탁사업 결과 공유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위탁사업 결과 도출된 제안사항을 공유하고, 제안내용 논의 순서는 2차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제2차 ('20.2.11)	▶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방안 등 - 논의 순서는 협의회 진행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품목별 단계적 도입 방안의 경우 품목,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 논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 필요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출 요청
제3차 ('20.11.4)	▶ 그간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 공유 및 안건 논의 순서 검토 - 실무협의회 논의 안건 중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적은 'Non-GMO 표시기준 개선'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것을 제안 - 논의순서는 식약처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에 대부분 위원 동의
제4차 ('20.12.9)	▶ Non-GMO 표시기준 개선 논의 - Non-GMO 표시 식품의 비의도적 혼입 인정 기준 0.9%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일부 위원은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제5차 ('20.12.17)	▶ Non-GMO 표시 개선 안건에 대한 위원 모두 동의 - 국외 기준 및 수입 비유전자변형 대두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Non-GMO 강조 표시에 대한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 인정에 모든 위원 동의
제6차 ('21.3.9)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 - 연도별 소비자 인식도 조사, 팸투어, 다큐제작 등 소비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필요(산업계) ▶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원료수급 문제점 등 파급효과 -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생산·판매 불균형에 따른 피해가 크고 국내 자급률이 낮아 수입 GMO 농산물 사용 불가피(산업계)
제7차 ('21.4.23)	▶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 검토 - 대두유 등 품목별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완전표시제 우선 도입 품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소비자·시민단체)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논의 불가(산업계)
제8차 ('21.6.1)	▶ 대두유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검토 - 품목별 검토,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

	나,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필요 -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후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 타당
제9차 ('21.6.17)	▶ 카놀라유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검토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 원료(카놀라, 조유) 수급 문제, Non-GMO 원료 사용으로 제품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제10차 ('21.7.16)	▶ 옥수수유 및 면실유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및 향후 논의 계획 검토 - 옥수수유, 면실유 포함 식용유지 품목별 생산·수입현황 및 관련 용역 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도입 품목 선정 제안 - 제1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인식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단체별 의견수렴
제11차 ('21.8.31)	▶ 유전자변형식품의 소비자 인식개선 방안 논의 - '20년 대국민 유전자변형식품 인식도 조사 결과 공유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제고 필요성에는 산업계, 시민단체등 모두 동의하나 인식 제고 사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제12차 ('21.9.29)	▶ 당류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 검토 - 품목별 단계적 표시제 강화 추진을 위해 품목별 생산수입현황을 포함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추가비용, 소비자 편익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제13차~15차 ('21.10.28, 11.23, 12.7)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품목별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사업 결과 공유 및 의견청취
제16차 ('22.01.19.)	▶ '21년 실무협의회 논의결과 정리 및 '22년 실무협의회 운영(안) 논의 -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품목별 도입 방향 및 향후 중점 논의 안건 합의 ①완전표시제 우선 도입품목 선정 및 단계적 확대, ②Non-GMO표시기준(0.9%이하) 신속개정, ③표시면제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3→5%), ④소비자 인식개선, 사후관리 방안 등
제17차 ('22.10.31.)	▶ 향후 실무협의회 운영 방향 및 GMO표시제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공동 추진 방안 논의 -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협의회 공동 추진 동의, 향후 소비자·시민단체 측 의견 수렴하여 추가 논의
제18차 ('23.01.30.) 제19차 ('23.02.28.) 제20차 ('23.03.28.)	▶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공유 및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여론 합동 조사('23년~) 방안 논의 *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조사(식약처 용역사업: '22.12., ㈜엠브레인리서치) - (산업계) '23년 GMO 대국민 여론 합동조사 공동 추진 합의 -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 및 방법 논의 ▶ GMO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단체별 역할 논의 등

제21차 (‘23.04.28.) 제22차 (‘23.06.30.)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 양측 간 합의 가능한 수준의 공동 합의를 통해 협의회 정상화 방안 논의
제23차 (‘23.08.28.)	▶ Non-GMO 자율 표시 확대 방안* 등 논의 * 현행 GMO 표시면제 식품(간장, 유지류 등)의 Non-GMO 원재료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Non-GMO 자율 표시 논의
제24차 (‘23.11.27.)	▶ ’23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방안 등 논의 * 조사 대상 및 설문 문항 검토, 전문가 검토에 대한 의견 등
제25차 (‘24.03.27.)	▶ ’23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공유 * GMO 안전성,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등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제26차 (‘24.05.28.)	▶ GMO 표시 확대 시행 시 표시기준, Non-GMO 자율 표시 우선 추진 방안 등
제27차 (‘24.08.14.)	▶ Non-GMO 자율 표시 시행 시 증빙서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등 논의 - Non-GMO 표시 증빙서류, 비의도적 혼입치(불검출) 등 잠정 합의
제28차 (‘24.11.27)	▶ ’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Non-GMO 자율 표시 확대 방안 및 GMO 표시 확대 방안 등 논의